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경마장·장외발매소 등 정부의 경마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7325호, '20.5.26. 공포, '20.11.27. 시행)됨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17101호, '20.3.24)에 따른 용어 정비와 현행 경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환급금 배분방식을 추첨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뢰성·공정성 논란으로 '66년 이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특별승마식의 환급금 산출방식 및 배분방식을 삭제하고, 특별승마식의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의 산출방식 및 배분방식은 마사회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별표1 개정 및 제10조제5항 신설)
- 나. 경마감독위원회가 신설(마사회법 제44조의2)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사유, 회의 소집 및 의결, 관계인 의견 청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 다.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마사회법 제61조제1항 제7호)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3 제7호 신설)

라. 어려운 법률용어인 ‘출주(出走)’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출전’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17101호, '20.3.24)에 따라,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개정하고(안 제4조·제5조제2호·제6조제3항·제10조제4항·제14조 제2항제3호·제25조제1항제1호 개정), ‘예시장’을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으로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관련 검토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개정안, 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법안담당

직 위	성 명	사무실 전화	E-mail
축산정책국장	이주명	044-201-2301	leejm66@korea.kr
축산정책과장	박정훈	044-201-2311	hapak246@korea.kr
서기관	최승묵	044-201-2324	csmuk@korea.kr
주무관	홍승택	044-201-2325	winstaks@korea.kr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주기준”을 “출전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출주마”를 “출전마”로 하고 ‘예시장’을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출주”를 “출전”으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삼복승식 및 삼쌍승식”을 “삼복승식, 삼쌍승식 및 특별 승마식”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출주마”를 “출전마”로, “배분과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배분”을 “배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산출방식 및 그 배분방법과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출주마”를 “출전마”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경마감독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에 따른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마감독위원회를 대표하며, 경마감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④ 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경마감독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마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5조제1항제1호 중 “출주정지”를 “출전정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급금 산출방식(제10조 관련)

1. 각 승마투표방법(특별승마식을 제외한다)에서의 환급금 총액
 $\text{마권 총발매금액} \times [1 - (\text{마권발매 수득률} + \text{마권발매 과세율})]$
2. 연승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각 승마별 환급금 총액
 가. 제1착마 및 제2착마를 승마로 할 경우: 환급금 총액의 2분의 1
 나. 제1착마, 제2착마 및 제3착마를 승마로 할 경우: 환급금 총액의 3분의 1
3. 복연승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각 승마별 환급금 총액: 환급금 총액의 3분의 1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 행위	근거 법 조문	금액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2호	100만원
3.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3호	70만원
4. 법 제40조·제41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4호	100만원
5.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5호	100만원
6.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6호	100만원
7.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7호	100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주마의 <u>출주기준</u>)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마의 <u>출주기준</u>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제4조(경주마의 <u>출전기준</u>) ----- ----- <u>출전</u> <u>기준</u> -----.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경마장의 시설 · 설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시설 ·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심판소, 검량소(檢量所), 장안소(<u>출주마</u> 가 경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장소), <u>예시장</u> , 마권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3. (생 략)	제5조(경마장의 시설 · 설비) --- ----- -----. 1. (현행과 같음) 2. ----- -- <u>출전마</u> ----- -----예시장 (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3. (현행과 같음)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① · ② (생 략) ③ 마권은 해당 경주에 <u>출주할</u>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그 경주의 출발 전에 발매를 마감하여야 한다.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출전</u> ----- ----- ----- -----.
제9조(환급률 등의 게시) 마사회는 각 경주마다 마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각 승마투	제9조(환급률 등의 게시) ----- ----- -----

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경마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게시하기 곤란한 승마투표방법인 쌍승식, 삼복승식 및 삼쌍승식의 경우에는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단말기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환급금) ① ~ ③ (생략)

④ 둘 이상의 출주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 배분과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배분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

----- 삼복승식, 삼쌍승식 및 특별승마식 -----

-----.

제10조(환급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출전마 -----

----- 배분 -----

-----.

⑤ 특별승마식의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산출방식 및 그 배분방법과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4조(개최운영위원) ① (생략)

② 개최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 (생략)

3. 출주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 13. (생략)

<신설>

제14조(개최운영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출전마 -----

4. ~ 13.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경마감독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에 따른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마감독위원회를 대표하며, 경마감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u>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u>④ 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u> <u>⑤ 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⑥ 경마감독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마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제25조(경마장의 단속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	제25조(경마장의 단속 등) ① --- ----- ----- -----

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주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 상태 등의 검사

2. 3. (생략)

②·③ (생략)

[별표1] 환급금 산출방식

1. 각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 총액
마권 총발매금액×[1-(마권발매 수득률
+마권발매 과세율)]

2. 연승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각 승마별 환급금 총액

가. 제1착마 및 제2착마를 승마로 할 경우: 환급금 총액의 2분의 1

나. 제1착마, 제2착마 및 제3착마를 승마로 할 경우: 환급금 총액의 3분의 1

3. 복연승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각 승마별 환급금 총액: 환급금 총액의 3분의 1

4.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각 도착 순위별 당첨번호에 대한 환급금 총액

가. 제1착마 당첨번호: 총환급금의 100분의 50

나. 제2착마 당첨번호: 총환급금의 100분의 20

다. 제3착마 당첨번호: 총환급금의 100분의 15

라. 제4착마 당첨번호: 총환급금의 100분의 10

마. 제5착 이하 마 당첨번호: 총환급금의 100분의 5를 각 도착순위별 당첨번호에 똑같이 나눈

-----.

1. ----- 출전정지

2.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1] 환급금 산출방식

1. 각 승마투표방법(특별승마식을 제외한다)에서의 환급금 총액

마권 총발매금액×[1-(마권발매 수득률
+마권발매 과세율)]

2. 연승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각 승마별 환급금 총액

가. 제1착마 및 제2착마를 승마로 할 경우: 환급금 총액의 2분의 1

나. 제1착마, 제2착마 및 제3착마를 승마로 할 경우: 환급금 총액의 3분의 1

3. 복연승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각 승마별 환급금 총액: 환급금 총액의 3분의 1

4. <삭제>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 행위	법 조문	금 액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2호	100만원
3.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3호	70만원
4. 법 제40조·제41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4호	100만원
5.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5호	100만원
6.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6호	100만원
<신 설>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 행위	법 조문	금 액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2호	100만원
3.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3호	70만원
4. 법 제40조·제41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4호	100만원
5.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5호	100만원
6.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6호	100만원
7.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7호	100만원